

대학원 학칙



한국항공대학교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0. 09. 01.		16	2020. 08. 25.	
2	2011. 05. 01.		17	2021. 01. 20.	
3	2011. 09. 01.		18		
4	2013. 08. 27.		19		
5	2013. 11. 14.		20		
6	2014. 03. 04.		21		
7	2014. 06. 11.		22		
8	2015. 05. 01.		23		
9	2016. 03. 01.		24		
10	2016. 12. 01.		25		
11	2017. 03. 17.		26		
12	2018. 05. 10.		27		
13	2018. 11. 15.		28		
14	2019. 10. 07.		29		
15	2020. 02. 24.		30		

대학원 학칙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 (목적)** 본 대학원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 설치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교육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명칭)** 본 대학교에는 일반대학원인 대학원, 특수대학원인 항공경영대학원을 둔다 (이하 “각 대학원” 이라 한다). <개정 2008.9.1., 2013.8.27.>
- 제3조 (설치과정)** ①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을 두고, 항공경영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. <개정 2013.8.27.>
- ② 일반대학원에 학·연·산협동과정, 학과간 협동과정, 학·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07.6.1.>
- ③ 각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3.8.27.>
- ④ 일반대학원에 복수학위제 및 공동학위제에 의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3.8.27., 2020.8.25.>
- 제4조 (설치학과 및 학생정원)**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은 <별표 1> 과 같다. 다만, 석·박사 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안에서 정한다.
- 제5조 (수업)** ① 각 대학원의 수업은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1., 2013.8.27., 2021.1.20>
- ② 수업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, 방송·정보통신에 의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<신설 2021.1.20.>
- 제6조 (학칙개정절차)**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개정안 교내 사전 공고와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. <개정 2008.9.1., 2018.11.15.>

제 2 장 입학 및 편입학

- 제7조 (입학시기)** 입학 또는 편입학 시기는 매 학기 시작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- 제8조 (입학자격)** 각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 <개정 2013.8.27.>
- ① 석사학위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
1. 국내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
 2.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
 3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

4.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 박사학위과정

1. 국내·외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
2.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9조 (입학전형방법) ①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. <개정 2011.9.1>

② 세부 전형방법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③ 대학원 입학지원자 중 학부과정 평점평균이 4.0이상(4.5만점 기준)인 수학능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로써 입학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10조 (지원절차) 각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각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27.>

제11조 (편입학 및 정원 외 입학) ① 편입학은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전형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,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학칙 제4조에 의하지 않고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

2.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

3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
제 3 장 등록, 휴학 및 복학

제12조 (등록) ① 소정의 등록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, 수료를 위하여 일반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각 4개 학기 이상, 석·박사통합과정은 8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고 항공·경영대학원은 5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 수업 연한이 단축된 기간만큼 등록 횟수를 줄일 수 있다. <개정 2013.8.27., 2016.12.1., 2020.2.24.>

②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.

제13조 (휴학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,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는 4개 학기, 석·박사통합과정에서는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군복무 또는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 한다. <개정 2013.8.27.>

③ 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제한된 휴학기간을 초과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 <개정 2008.9.1.>

④ 전 제2항의 육아휴학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입

신 또는 출산시 가능하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13.8.27.>

제14조 (복학)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군제대 복학자는 학기초 4주내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.8.27.>

제 4 장 제적, 자퇴 및 재입학

제15조 (제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. 단, 3호 해당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1.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
2. 등록 기간 내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
3.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여 불미한 행동을 한 자

제16조 (자퇴)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7조 (재입학) ① 각 대학원에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3.8.27.>

② 삭제 <2005.9.1.>

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.

④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학업성적 등을 사정하여 기 이수한 학점수에 따라 재입학 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8.27.>

제 5 장 전공 및 지도교수

제18조 (전공 및 지도교수 선정) 학생의 수업과 연구의 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 개인별 전공 및 지도교수를 선정한다.

1. 일반대학원의 모든 과정은 입학 후 첫학기에 전공 및 지도교수를 선정하며, 항공경영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2학기 이수 후 전공 및 지도교수를 선정한다. 단, 외국인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 및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9.1., 2013.8.27., 2016.3.1.>
2. 삭제 <2006.9.1.>
3. 학생은 전공과 지도교수를 선정한 후 연구보고서를 매 학기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 (전공 및 지도교수 변경) ① 일반대학원 전공변경은 동일학과내로 하고 항공경영대학원 세부전공 변경은 동일전공 내에 한한다. <개정 2010.9.1.>

②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은 공통된 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한다.

③ 전공 및 지도교수의 변경은 재학 기간 내 1회에 한하며, 그 절차는 시행세칙에 따라 정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퇴직, 해외파견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9조의2 (전과 및 전공변경) 일반대학원 전과 및 항공경영대학원의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9.1.>

[본조 신설 2009.7.1]

제 6 장 수업연한, 재학연한 및 학점

제20조 (수업연한) ① 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2년(4개 학기), 학·석사연계과정 1.5년(3개 학기), 박사학위 과정 2년(4개 학기), 석·박사통합과정은 4년(8개 학기)으로 하며, 항공경영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 6개월(5개 학기)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은 수료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, 항공·경영대학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2.24.>

1. 일반대학원 석사과정(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거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) : 최대 6개월(1개 학기)
2. 일반대학원 석·박사 통합과정 : 최대 1년(2개 학기)
3. 항공·경영대학원 석사과정 : 최대 6개월(1개 학기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.

제21조 (재학연한) ① 일반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, 항공·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은 5년(10개 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8.27., 2020.2.24.>

② 전항에 있어서의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에 필요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.

제22조 (교과과정, 이수학점) ① 삭제 <2006.9.1.>

②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를 교과학점과 연구지도학점으로 나눈다.

1. 교과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4학점, 박사학위과정 60학점(석사학위과정 취득 학점 포함) 및 석·박사통합과정 60학점을 최저로 한다. 다만,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6.1., 2008.9.1., 2009.3.1., 2010.9.1., 2020.8.25.>
2. 대학의 상급학년의 학사 및 석사과정 공동 설강 과목은 6학점까지 인정한다. 그러나 학사과정에서 이수하고 그 과정의 소요학점으로 산입된 교과목과 같은 내용의 재 이수 인정하지 않는다.
3. 연구지도학점은 교과학점 이외에 지도교수 선정 때부터 매 학기 2학점씩 이를 과한다. <개정 2007.6.1.>

제23조 (학점인정) 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동일계열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24학점까지, 비동일계열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12학점(인문사회계열 및 항공운항관리학과는 15학점)까지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본교 일반대학원 동일계열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7.6.1., 2010.9.1., 2013.8.27., 2016.3.1.>

② 일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교과학점 12학점(연구지도학점 제외)을 초과하여

이수할 수 없으며, 항공경영대학원의 경우 매 학기 교과학점 6학점(연구지도학점 제외)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 <개정 2013.8.27.>

③ 국내·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7.6.1., 2008.9.1.>

④ 삭제 <2016.12.1.>

제23조의2 (학·군제휴) 학·군제휴협약에 의해 군 간부의 학위과정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학사관리 및 학점교류 등 학·군간 학문교류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.

[본조 신설 2008.2.1.]

제23조의3 (계절수업) ①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계절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[본조 신설 2020.2.24.]

제24조 (타 계열 또는 타 학과 과목이수) ① 타 계열 또는 타 학과 과목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 <개정 2013.8.27.>

② 타 계열 과목은 각 과정별 수료학점의 1/2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3.8.27.>

제25조 (재입학 인정학점) 학생으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학과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그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제26조 (성적)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 <개정 2011.9.1.>

성 적	배 점	평 점
A ⁺	95-100	4.5
A ⁰	90-94	4.0
B ⁺	85-89	3.5
B ⁰	80-84	3.0
C ⁺	75-79	2.5
C ⁰	70-74	2.0
F	0-69	0.0

② F가 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. 재수강하는 경우 기존성적은 R(Retake)로 대체 표기하며,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<개정 2014.7.1.>

③ 수료를 위한 총 이수 교과학점의 평점은 평균 3.0이상이어야 한다.

④ 연구지도학점 및 선수과목은 총 이수학점 및 평점에 산입하지 않는다. 단, 선수과목 중 학점인정과목은 총 이수학점 및 평점에 산입한다<개정 2013.8.27., 2018.11.15.>

⑤ 특별히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에 대해서는 합격(P) 또는 불합격(NP)의 성적을

줄 수 있다. 이러한 과목은 총 이수학점에는 산입하지만 총 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. <개정 2008.2.1.>

제 7 장 자격시험

제27조 (영어시험) ① 학생은 입학 후 각 과정의 전공에 필요한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단, 항공경영대학원은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10.9.1., 2013.8.27.>

② 삭제 <2006.9.1.>

③ 영어시험의 시행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9.1., 2014.3.4.>

제28조 (종합시험) ① 학생은 입학 후 각 과정의 전공과목에 관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9.1.>

② 삭제 <2010.9.1.>

③ 종합시험의 시행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9.1.>

제29조 (중간자격시험) ① 석·박사통합과정 재학생은 중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다.

② 15학점이상의 교과목을 평점평균 3.0이상으로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으면 중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 8 장 학위논문

제30조 (제출자격) 학위청구논문은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9.1.>

제31조 (승인서) 학위청구논문은 지도교수와 학과(항공경영대학원은 전공) 주임교수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9.1., 2013.8.27.>

제32조 (논문심사)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가 행한다.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 교원 혹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며,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,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7.6.1., 2019.10.7.>

② 주임교수가 심사위원장을 지정하고, 심사위원장은 그 논문의 심사를 주재하며, 판정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. <개정 2007.6.1.>

③ 논문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공개발표에 의한 구술시험으로 행한다.

제33조 (판정) ① 논문심사결과의 판정은 합격, 불합격으로 하며,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이 결정되며, 그 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 각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6.1., 2011.5.1., 2018.5.10.>

- ② 합격으로 판정된 학위논문은 완성본을 작성하여 모든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소정 기간 내에 각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6.1., 2011.5.1., 2018.5.10.>

제34조 (제출시한) ①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3년이 경과한 자 또는 박사학위과정(석·박사통합과정 포함)을 수료하고 8년이 경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(학점제학위 신청 포함) 할 수 없다. <개정 2013.8.27.>

② 삭제 <2005.9.1.>

③ 제1항의 시한이 경과한 자는 1회에 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논문제출자격(학점제학위 신청 포함)을 회복할 수 있다. 단, 논문제출자격 회복 후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8.27., 2013.8.27., 2018.5.10.>

제35조 (결과보고) 각 대학원장은 영어시험, 종합시험, 학위청구논문심사의 결과를 대학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6.1., 2011.5.1., 2013.8.27., 2014.3.4.>

제 9 장 학위수여 및 논문공표

제36조 (학위수여 및 학위수여의 취소) ① 각 과정의 소요학점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07.6.1., 2013.8.27.>

②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여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교과학점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학과에서 정하는 자격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07.6.1., 2008.9.1., 2009.3.1., 2010.9.1., 2018.5.10., 2020.8.25.>

③ 총장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37조 (학위종별)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술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19.10.7., 2020.2.24.>

가. 공학석사 :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, 항공전자정보공학과, 항공재료공학과, 컴퓨터공학과, 스마트드론융합학과, 학·연·산 협동과정의 해당학과

나. 이학석사 : 항공운항관리학과, 항공교통물류학과, 학·연·산 협동과정의 해당학과
다. 경영학석사 : 경영학과

라. 문학석사 : 영어학과

마. 법학석사 : 항공우주법학과

바. 항공경영학석사 : 항공경영전공

2.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술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

2019.10.7., 2020.2.24.>

- 가. 공학박사 :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, 항공전자정보공학과, 항공재료공학과, 컴퓨터공학과, 스마트드론융합학과, 학·연·산 협동과정의 해당학과
 - 나. 이학박사 : 항공운항관리학과(항공운항관리전공), 항공교통물류학과, 학·연·산협동과정의 해당학과
 - 다. 경영학박사 : 경영학과, 항공경영학과(계약학과)
 - 라. 법학박사 : 항공운항관리학과(항공우주법전공)
 - 마. 문학박사 : 영어학과
3. 항공경영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학위를 수여하며, 학위명 뒤에 세부 전공명을 괄호안에 표기한다. <개정 2019.10.7.>
- 가. 이학석사 : 항공교통물류전공(항공교통, 교통, 물류), 항공운항관리전공(항공운항관리)
 - 나. 법학석사 : 항공우주법전공(항공우주법, 항공우주정책, 사법, 공법)
 - 다. 경영학석사 : 경영전공(경영), 항공경영전공(항공경영), 관광경영전공(관광경영), 테크노경영전공(기술경영, 항공기술경영), 항공경영학과(항공경영)·계약학과

[전문개정 2018.5.10.]

- 제38조 (논문공표)**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관련 학회지 게재, 정기간행물 게재, 국제학술지 게재, 학술세미나 발표, 단행본 발간, 기타 방법 등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- 제39조 (석·박사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수여)** 석·박사통합과정의 중간자격시험에 최종 불합격한 자 및 석·박사통합과정포기자가 제36조의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0.9.1.>
- 제40조 (학위기)**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수여는 <별지서식1>, 박사학위 수여는 <별지서식2>, 항공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수여는 <별지서식3>에 의한 학위기로서 시행한다. <개정 2008.9.1.>

제 10 장 명예박사학위

- 제41조 (자격)** 학문과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항공산업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- 제42조 (학위종별)** ① 본 대학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공학박사, 이학박사, 법학박사 및 경영학박사로 구분하되, 이를 받을 자의 공헌의 성질에 따라 구별한다.
- ② 명예박사학위는 <별지서식4>에 의한 학위기로서 시행한다.
- 제43조 (수여절차)**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.

제 11 장 장학금 및 상별

제44조 (장학금) ①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7.6.1.>

② 장학생 선발에 관해서는 각 대학원 장학규정으로 따로 정하며,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각 대학원행정실에서 선발한다. <개정 2007.6.1., 2011.5.1., 2018.5.10., 2020.2.24.>

제45조 (포상 및 징계) ①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, 대내외적으로 학교를 선양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06.9.1., 2013.8.27.>

②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징계 할 수 있다. <개정 2006.9.1., 2013.8.27.>

제 12 장 직 제

제46조 (조직) ① 각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. <개정 2007.6.1., 2013.8.27.>

② 삭제 <2007.6.1.>

③ 각 대학원에는 각 학과(항공경영대학원은 각 전공)마다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08.9.1., 2018.5.10.>

④ 삭제 <2007.6.1.>

⑤ 각 대학원에는 행정실을 둔다. <신설 2011.5.1., 2018.5.10.>

⑥ 각 대학원에는 업무를 수행할 실장과 직원을 둔다. <신설 2011.5.1., 2018.5.10.>

제47조 (주임 및 지도교수) 대학원 각 학과(항공경영대학원은 각 전공)에는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. <개정 2008.9.1.>

제 13 장 대학원위원회

제48조 (설치 및 구성) ①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두며, 위원회 산하에는 대학원 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9.1.>

② 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, 항공경영대학원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본 대학교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하나 사안에 따라 항공경영대학원장이 될 수 있다. <개정 2007.6.1., 2008.9.1., 2011.5.1., 2020.8.25.>

③ 삭제 <2005.9.1.>

④ 삭제 <2005.9.1.>

제49조 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0.2.24.>

제50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,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,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
5.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6. 학생포상 및 징계 등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
7.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51조 (위원회의 소집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삭제 <2005.9.1.>

제 14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

제52조 (연구과정) ① 각 대학원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.

② 연구과정학생은 연구에 필요한 관련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며, 교과학점은 12학점을 최저로 한다.

③ 연구과정학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<별지서식 5>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52조의2 (박사 후 과정)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박사 후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 신설 2008.2.1.]

제53조 (공개강좌) ① 각 대학원이 실시하는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,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행할 수 있다.

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, 기간, 수강인원,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매 개강 시 각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. <개정 2007.6.1., 2008.9.1., 2018.5.10.>

제 15 장 학생활동

제54조 (총학생회 및 원우회) ①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일반대학원에 총학생회를 두며, 항공·경영대학원에는 원우회를 둔다. <개정 2013.8.27.>

② 총학생회 및 원우회는 연간 사업계획, 예·결산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 대

학원장의 승인을 얻는다. <개정 2018.5.10.>

제 16 장 계약학과

- 제55조 (계약학과)** 각 대학원은 「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」에 의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계약학과의 명칭은 <별표 1-2>와 같다. <개정 2017.3.17.>
- 제56조 (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)** 교육과정은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운영은 각 대학원에서 담당한다.
- 제57조 (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)** ① 계약학과의 입학지원자는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,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② 학생선발 방법은 서류전형으로 할 수 있다.
- 제58조 (학생의 정원)**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「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5항에 의하여 별도의 정원으로 본다. 학과별 정원은 <별표 1-2>와 같다. <개정 2017.3.17., 2019.10.7.>
- 제59조 (운영경비 부담 및 학생 등록금)**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한다. <개정 2014.3.4.>
- 제60조 (학기 및 수업일수)** ① 계약학과는 일반대학원 4학기, 항공·경영대학원은 5학기 이상으로 운영한다. <개정 2008.9.1.>
② 수업일수는 학기 당 15주 이상으로 한다.
③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, 현장실습수업, 원격수업 그리고 그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수업장소는 계약에 의한다. <개정 2008.9.1., 2014.3.4.>
- 제61조 (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보호)** ①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.
②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 이전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 계약학과의 학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의하되,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학과 재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한다.
- 제62조 (이수학점 및 학위수여)** 계약학과의 총 이수학점과 학위수여종별은 본 대학원 학칙에 의한다. <개정 2018.5.10.>
- 제63조 (준용규정)** 계약학과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
제 17 장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<신설 2020.8.25.>

- 제64조 (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과정)** 일반대학원에 복수학위제 및 공동학위제에 의한 석

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들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18 장 준용규정 및 시행세칙

제65조 (준용규정)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
[중전 제64조에서 제65조로 변경 <2020.08.25.>]

제66조 (시행세칙)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내용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[중전 제64조에서 제65조로 변경 <2020.8.25.>]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준용규정) 학년, 학기, 수업일수, 등록, 시험, 징계, 기타 제증명서 발급 등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한국항공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- ③ 이 개정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이 개정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이 개정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⑥ 이 개정학칙은 199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⑦ 이 개정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⑧ 이 개정학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경과조치) 제17조 제1항 수업연한의 적용에 있어 학칙개정('97. 10. 21)이전 재학생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2년, 박사학위과정 3년으로 한다.
- ② 이 개정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경과조치) 제18조 제1항 수업연한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- ② 이 개정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경과조치) 1998학년도 후기 입학자 까지는 중전의 규정에 의하며, 199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이 개정 학칙에 의한다.
- ② 제34조 제1항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시한의 적용은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③ 이 개정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학과통합, 학과명칭변경 및 계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에 석사과정 공학계열 항공공학과, 기계설계학과, 항공기계공학과, 항공우주공학과, 항공통신정보공학과 및 박사과정 공학계열 항공공학과, 기계설계학과, 항공통신정보공학과 및 자연과학계열 항공운항관리학과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)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에 항공교통학과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폐지) 이 개정 대학원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항공산업정보대학원학칙 및 경영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.
- ③ (항공산업정보대학원 학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
 - 1. 교육부 대학 81423-1194('97. 10. 25)로 폐지된 항공경영학과의 재학생에게는 학적을 유지하며 경영학석사를 수여한다.
 - 2. (학과통합으로 인한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석사과정 항공기계공학과 및 기계설계학과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 - 3. (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항공교통학과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학칙 제17조 재입학에 관한 규정은 각 대학원 설립 이후의 모든 제적생 및 자퇴생에게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특수대학원의 명칭이 항공산업·경영대학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변경 이전의 졸업생 및 명칭변경이후 재학생, 복학자, 재입학자는 항공산업·경영대학원 명칭을 적용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제2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07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통합 이전의 항공산업정보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학기에 연구지도학점 2학점을 과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특수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특수대학원의 명칭이 항공·경영대학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변경 이전의 졸업생 및 명칭변경이후 재학생, 복학자, 재입학자는 항공·경영대학원 명칭을 적용한다.
- ③ (특수대학원의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
1.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학과로 입학한 자는 해당 학과로 학적을 유지한다.
 2. 폐지된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와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과로 입학한 자는 학적을 유지하며 공학석사를 수여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제4조 관련 <별표 1> 및 제19조의2는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개정 학칙 제26조에 의한 학업성적 분류는 2012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하며,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 학칙대로 학업성적을 분류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개정 학칙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육아휴학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한다.
- ③ (경과조치) 개정 학칙 제23조 제1항에 의한 박사학위 입학자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은 2013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④ (경과조치) 개정 학칙 제24조 제2항에 의한 타 계열 과목 이수 학점 제한은 2013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⑤ (경과조치) 개정 학칙 제34조에 의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시한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한다. 다만, 기수료자는 과정 구분 없이 학칙 개정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4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4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개정 학칙 제26조에 의한 재수강 과목 표기 및 평점평균 산출은 2014학년도 2학기 이후에 수강한 과목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) 1.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항공전자공학과 및 정보통신공학과에 입학한 자는 학칙시행세칙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수학기에 관계 없이 통합된 항공전자정보공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.
2.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항공전자공학과 및 정보통신공학과로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통합된 항공전자정보공학과 학적을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개정 학칙 제12조 제1항 및 제20조 1항에 의한 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테크노경영 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복학, 재입학 또는 졸업을 위한 연구등록을 할 경우 기존 학적을 유지하며, 기술경영학 석사를 수여한다. 단,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전공 및 학위를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경과조치) 개정 학칙 중 제26조 4항 선수과목은 2019학년도 1학기 이수과목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학위종별 경과조치)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항공전자공학과, 정보통신공학과, 항공경영학과(계약학과)를 수료한 자는 이전 학칙 제37조 학위종별을 적용하여 학위를 수여한다.
 ③ (폐과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로 입학한 자가 재입학하는 경우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 학적을 적용한다.
 ④ (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제37조제2항제2호의 항공운항관리학과 전공명칭 변경과 제3항제1호 항공운항관리전공의 세부전공 명칭 변경은 202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
 1.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(수료생 제외)는 학칙 시행세칙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스마트드론융합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
 2. 신설학과로 전과한 자가 전과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, 자격시험,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등은 전과 이후 학과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 ② (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또는 입학 예정자는 학칙 시행세칙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과정, 이수학기, 계열 구분없이 스마트드론융합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3.8.27. 2013.11.14., 2015.5.1., 2019.10.7., 2020.2.24.>

입 학 정 원 표

과 정		계 열	학 과 명	입학정원
일반대학원	석사학위과정	공학계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 ○ 항공전자정보공학과 ○ 컴퓨터공학과 ○ 항공재료공학과 ○ 스마트드론융합학과 	130
		자연과학계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운항관리학과 ○ 항공교통물류학과 	
		인문사회계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학과 ○ 영어학과 ○ 항공우주법학과 	
	협동과정	학·연·산협동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항공우주연구원 ○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○ 한국생산기술연구원 	
		학과간협동과정	○ 항공경영전공	
	소 계			
	박사학위과정 (석·박사 통합과정)	공학계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 ○ 항공전자정보공학과 ○ 컴퓨터공학과 ○ 항공재료공학과 ○ 스마트드론융합학과 	53
		자연과학계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운항관리학과 ○ 항공교통물류학과 	
		인문사회계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학과 ○ 영어학과 	
		협동과정	학·연·산협동과정	
소 계			53	
일 반 대 학 원 계				183

과 정		전 공 명	입학정원
항공· 경영대학원	석사학위과정 (항공산업계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교통물류전공 ○ 항공운항관리전공 ○ 항공우주법전공 	90
	석사학위과정 (경영계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전공 ○ 항공경영전공 ○ 관광경영전공 ○ 테크노경영전공 	
특 수 대 학 원 계			90

[별표 1-1] <개정 2013.8.27., 삭제 2015.5.1 >

계약학과의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표

[별표 1-2] <신설 2017.3.17>

계약학과의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표

과 정		학과명	입학정원	계약기관
항공경영 대학원	석사과정	항공경영학과	40명	한국공항공사
일반 대학원	박사과정	항공경영학과	10명	

[별지서식 1]

석제 호

학 위 기

성 명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(○○○학과)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○○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

논문제목 :

년 월 일

한 국 항 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○ ○ ○ (직인)

위의 증명에 의하여 ○○석사의 학위를 수여함

년 월 일

한 국 항 공 대 학 교 총 장 ○ ○ ○ (직인)

학위번호 : 항공대0000(석)000

[별지서식 2]

박제 호

학 위 기

성 명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(○○○학과)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○○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

논문제목 :

년 월 일

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장 ○ ○ ○ (직인)

위의 증명에 의하여 ○○박사의 학위를 수여함

년 월 일

한국항공대학교 총장 ○ ○ ○ (직인)

학위번호 : 항공대0000(박)000

[별지서식 3]

석제 호

학 위 기

성 명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항공·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(000전공)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
회의 심의를 거쳐 00석사(세부전공명)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

년 월 일

한국항공대학교 항공·경영대학원장 ○ ○ ○ (직인)

위의 증명에 의하여 00석사(세부전공명)의 학위를 수여함

년 월 일

한 국 항 공 대 학 교 총 장 ○ ○ ○ (직인)

학위번호 : 항공대학경0000(석)000

[별지서식 4]

명박제 호

학 위 기

성 명
년 월 일생

이 분은 (학문과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)(항공산업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)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()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

년 월 일

한 국 항 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○ ○ ○ (직인)

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()박사 학위를 수여함

한 국 항 공 대 학 교 총 장 ○ ○ ○ (직인)

학위번호 : 항공대0000(명박)0000

[별지서식 4]

명박제 호

학 위 기

성 명
년 월 일생

이 분은 (학문과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)(항공산업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)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()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

년 월 일

한 국 항 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○ ○ ○ (직인)

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()박사 학위를 수여함

한 국 항 공 대 학 교 총 장 ○ ○ ○ (직인)

학위번호 : 항공대0000(명박)0000

[별지서식 5]

제 호	<h2 style="margin: 0;">연 구 실 적 증 명 서</h2>
	성 명 년 월 일생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사람은 본 대학교 0 0 0 대학원에서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</p>	
연구과제명 :	
	년 월 일
한국항공대학교 ○○○대학원장 ○ ○ ○ (직인)	
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명서를 수여함	
	년 월 일
한국항공대학교 총장 ○ ○ ○ (직인)	